

1. 제조(수입)업허가 · 변경

- 가. 신규허가  
 1) (주)씨에이씨무역 [수입자허가 98호]  
 - 대표자 : 김 봉 진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반포동 512-140  
 2) (주)이상무역 [수입자허가 제99호]  
 - 대표자 : 최 상 남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43-8

나. 변경허가

업체명	내역	변경내역
(주)제일화학	제조시설 증설	시설확장(증축), 믹서기 용량증대

2. [제3회 서울특별시 수의사의 날]행사

서울시수의사회에서는 농이촌 복지학교 도서 및 고아원 양로원 애완동물 보네기운동의 일환으로 "제3회 서울특별시 수의사의 날" 행사를 95년 11월 12일 호텔신라 2층 연회장에 개최한다.

3. 추천업무 전산화 및 잔류방지를 위한 세부 실천 방안 설명회 개최

협회의 정부위임업무에 대한 구비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력부족과 교통정체로 인한 회원사의 애로사항을 해소키 위해 전산망을 통하여 협회 및 은행과 세관까지 업무처리를 할수 있는 [무역자동화(EDI) 프로그램]이 국내최초로 자체개발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여 효용성과 능률의 향상됨과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집중전개하고 있는 세부실천방안등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물약사관련 업무에 대한 설명회를 10월 23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 설명회는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의 담당실무자 김용범씨와 EDI프로그램을 직접개발한 [동우컴퓨터]의 이원옥사장이 참석하여 정부차원의 무역업무자동화 추진현황과 프로그램의 활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협회 기획조사부 신행철차장의 관련업무 전반에 걸친 질의응답이 있었다.

4. 동물약사감시 및 국가검정품 관리실태 일제점검

농림수산부에서는 수의과학연구소와 동물약품협회와 공동으로 95년 10월부터 96년 2월까지 동물약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동물약사감시를 순차적으로 실행하는바, 제반사항을 점검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 유의할 것과 협회에서 점검예정 항목인 [생산판매 실적 보고, 주문용사료첨가제 신고 및 제조현황 및 국가검정품의 관리현황]에 대한 충실점검하여 줄 것을 안내 하였다.

5. 동물약품 제조용 유당수입의 건

1995년 유당의 시장접근물량증의 동물약품부분 증량이 무산되어 애초 계획대로 1,000톤으로 최종확정 됨에 따라 업체별 배정량을 소량소요업체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방법으로 제조정하여 확정하고 11월 30일까지 필히 통관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6. 국가검정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중 개정

농림수산부에서는 국가검정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중 항생물전체제의 검정기준을 개정고시(농림수산부 고시 제1995-91호 : 1995년 10월 26일)하여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관련내용은 얼마전 개정된 생물학전체제의 검정기준과 묶어 단일 제본으로 협회에서 출판계획중으로 부피관계상 동물약계에는 특집형태로 일부분씩 소개해 나갈 방침이다.

3. 국내축산물의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협의회

농림수산부에서는 금년 6월 국내산 축산물의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기관별 추진을 지시한 바 이에대한 각 기관별 추진실태를 점검키 위한 협의회를 10월 17일 농림수산부 소회의실에서 국립동물검역소, 수의과학연구소, 축산기술 연구소, 축협중앙회 및 관련단체장과 양축농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 하였다.

이에 농림수산부 가축위생과의 [육류위생수준 대책추진 협의자료]를 아래에 소개한다.

1. 추진 방향

- 가축사양, 사료, 동물약품등 모든 부분에서 종합적인 잔류물질 감소대책 추진
- 잔류물질 검사기능강화
- 미비된 각종 관련제도 정비
- 단계별 검사 강화

'97년부터 수입육류와 동등수준의 검사 실시

2. 부분별 그간의 추진사항

가. 제도개선

-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 사용 기준 제정 (농림수산부 고시 제95-51호 : '95. 7. 27)
- 항생물질에 대하여 축종별, 투여방법, 사용기준, 휴약기간 등을 경합
- 수의사는 휴약기간을 명시한 출하제한지시서의 발급을 의무화하였음.
- 동물용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제정
-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관리 철저

나. 검사 체계강화

- 1) 검사기술교육 실시
  - '95.6.14-6.24:잔류물질 검사 분석별 교육(시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원 18명)
- 2) 시도 가축위생소에 대한 검사 정밀도 점검
  - '95.5.1-7.24:1차(14개 시도 점검), 2차(6개 시도 점검)
- 3) 검사능력강화 예산확보(국비 50%) 단위 : 백만원

	'95(A)	'96(B)	B/A(%)
검사 장비	535	2,475	463%
검사 재료비	52	200	384
계	587	2,675	455

\* 지방비 예산(50%)는 별도임

다. 홍보 및 제도 실시

- 1) 양축가 및 관계관에 대한 유해잔류물질 검사계획동료교육 실시
  - '95.6.15:잔류방지 중앙교육 실시(우리부 회의실)
  - 시도 축산과정 및 유관단체 협회장
  - '95.7.4 : 종합 설명회 개최(축협중앙회 대강당) 206명참석
  - '95.7.12-7.27:시도 순회교육 실시 (9개도 11개지역)1,280명
  - '95.5-7월:시도 자체교육 실시(15개 시도)1,014명 참석
- 2) 잔류물질 오염방지 관련 홍보물제작 배포
  - 대한양돈협회
    - 포스터(10,000부) 및 팸플릿(30,000) 제작배포
  - 축협중앙회
    - 포스터 제작 배포(20,000부)
  - 한국동물약품협회
    - 제품별 효능·효과 과대선전 방지 추진
    - 사용설명서상 오·남용방지 표시 및 주의사항 확대표시추진
    - 협회홍보지를 통한 대양축농가 홍보

- 3) 메스컴을 이용한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 방안 홍보
  - 축산신문에 5회 게재

라. 잔류물질 검사 실시 (단위 : 건)

구분	'92	'93	'94	'95.8	비고
검사건수	45,956	46,265	46,360	32,042	

\*'95 검사실적('95.1-8월)

(단위 : 건)

	소	돼지	닭	계
검사건수	8,180	16,428	7,434	32,042